

■ [별지 제54호서식] (규칙 제99조제5항 관련) <개정 2025. 12. 5.>

개 표 상 황 표

[기기번호 :]

○○선거 ○○읍·면·동 제○투표구

1. 투표지분류 개시시각 : 년 월 일 시 분
2. 투표용지교부수와 투표수 대조결과

투표함수	선거인수 (①)	투표용지 교부수 (②)

투표수 (③)	투표용지교부수와 투표수의 차 (④=②-③)

3. 정당·후보자별 득표상황

부서별 구 분				투표지분류기운영부 [제 반, 책임사무원 성명 :]			심사·집계부 [제 반, 책임사무원 성명 :]			정정자 성명
				분류된 투표지수 (㉔)	재확인대상 투표지수 (㉕)	계 (투표총수) (㉔+㉕)	분류된 투표지 확인결과 (a)	재확인대상 투표지 확인결과 (b)	계 (투표수) (a+b)	
분류된 후보자별 득표수										
무효투표수										
계										
()는 투표지분류기에 투입하지 않은 투표지수이며 본수에 포함										
다른 선거 (선거구) 투표지수										

4. 투표지 분류기를 통과한 다른 선거(선거구) 투표지 내역

선거명(선거구명)	계			
매 수				

5. 위원 검열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부위원장	위원장

6. 위원장 공표시각 : 월 일 시 분

주: 1. 이 표는 해당부서의 책임개표사무원이 작성·확인한다.

2. 법 제216조제2항에 따라 개표를 읍·면·동 단위로 하는 때에는 선거명 중 "제○투표구"를 기재하지 않으며, 하나의 읍·면·동을 나누어 2 이상 선거구를 확정한 때에는 "○○읍·면·동○○선거구"로 한다.
3.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분류된 후보자별 득표수"칸을 "분류된 정당별 득표수"로 한다.
4. "2항 투표용지교부수와 투표수 대조결과"의 "투표수", "투표용지교부수와 투표수의 차"는 심사집계부에서 수기로 작성한다.
5. 사전투표·거소투표 및 선상투표를 개표하는 경우 "2항 투표용지교부수와 투표수 대조결과"의 "투표용지교부수"는 해당 회송용 봉투의 접수수를 기재하며, 법 제158조제5항에 따라 회송용 봉투를 교부하지 아니한 사전투표는 투표용지 교부수를 기재한다.
6. 개표진행 중 정정사유가 생긴 때에는 해당 부서의 책임사무원이 정정내용이 잘 보이도록 정정하고 정정자의 성명을 기재한다.
7. "2"항의 "투표수"와 "3"항 심사집계부의 "계(투표수)"는 같아야 한다.
8. 동시선거에서 다른 선거의 투표함에 잘못 투입된 투표지 개표상황표를 작성하는 때에는 투표구명을 "잘못 투입된 투표지(선거명·선거구명:)"로 작성하고 "4항 투표지 분류기를 통과한 다른 선거(선거구) 투표지 내역"은 기재하지 아니하며, "2항 투표용지교부수와 투표수 대조결과"에는 "투표수"만 기재하되, 개표소를 2개 이상 설치한 경우에는 개표상황표를 해당 선거의 개표소에 팩스 송부하고 잘못 투입된 투표지와 개표상황표를 함께 보관한다.
9. 이 서식에 필요한 사항은 추가·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